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시행 질의·답변(FAQ)

2012

-- 목 차 --

■ 일반사항

1.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1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2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3
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4

■ 통보주체 및 대상

1.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5
2.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6
3. 공동도급인 경우, 자사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정보까지 모두 통보해야합니까? ... 6
4.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7
5.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8
6.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8
7.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9
8.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10
- 9-1.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11
- 9-2.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11
- 10-1.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12
- 10-2.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12
11. 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변경통보를 계속 해야 합니까? 13
12.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계약되어 변경된 시점부터 통보되기 시작한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13
13.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1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대상이 됩니까? 14
14.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14

15.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08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금액 또는 준공기한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보해야 합니까? 14
16. 건설업체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건설업체와 계약하는 협력업체들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당해건설업체에 통보해야 합니까? 15
17.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15
18.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16
19.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체도 원수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16
20.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재하도급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17
21.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18
22.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합니까? 19
23.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19
24.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20
25.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

■ 발주자

1.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입니까? 21
2. 발주자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21
3. 발주자 기관명을 자동 입력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망(www.kiscon.net)의 발주자란에서 공공기관 검색을 했는데,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22

4.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3
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23
6.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23
7.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24
8.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24

■ 건설업체

1.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25
2. 기존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던 건설업체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26
3.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 업체명을 검색했는데 자사업체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7

○ 신규작성

1.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클릭시 메인화면에 공사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28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시 원도급공사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29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원도급 공사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급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아직 통보하지 않아 해당공사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30

○ 공사개요

1.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31
2. 당사는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도급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32

○ 현장기술인

1.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해야할 기술자의 범위는? 32

2.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33
3. 현장기술자가 공사기간동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기술자를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33
4.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34

○ 공동이행

1.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35
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36

○ 공사대금수령

1. 공사대금수령사항을 입력할 때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37

○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1.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계약 후 착수하기 전에 업체사정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38

○ 보증서

1.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 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39
2.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39

○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1.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40
2.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41
3.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42

○ 행정업무

1.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43
2.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44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까? 45
4. ‘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46
5.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47
6.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48

○ 계약해지·준공 및 준공처리

1.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49
2.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50

○ 장기계속공사

1.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51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52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53
4.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54
5.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도중에 계속비로 계약성질이 변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55
6.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계약체결 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금차 계약의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후 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는 ‘최초 총공사부기금액’과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 합니까? 56
7. 현재 건설업체가 파산한 상태로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도급 받은 공사(장기계속공사)는 계속 진행 상태이며 통보제도 시행일자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57

○ 발주자 확인/미확인/수정요청

1.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58
2.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59
3.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60
4.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61
5.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62

○ 행정처분

1.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는? 62
2.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은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63
3.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63
4.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 부과됩니까? 63
5. 건설업체에서 기한내에 통보하였는데 발주자가 30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 부과됩니까? 64

■ 일반사항

1.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이란 무엇입니까?

☞ 건설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말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건설공사의 개요, 도급계약내용(수급인, 도급금액, 공동도급 지분률 및 분담내용, 보증금 및 계약조건), 현장기술자 배치 현황, 공사진척 및 공사대금수령 현황, 하수급인 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부품제작·납품업체 등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종 정보가 종합적으로 기재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중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라 합니다.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하게 되며, 하도급공사의 개요, 하도급계약내용, 보증금, 현장기술인, 공사대금수령사항, 재하도급현황, 건설기계대여업체 현황,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통보된 공사정보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자에게 제공될 뿐 아니라, 전 국가적으로 종합 관리되어 건설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2008년부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가 시행되어 원도급 정보뿐 아니라 하도급정보까지 종합관리체계가 구축되어 건설산업의 투명화가 강화되며,

- 발주자와 정부가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거래 및 불법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 하도급 과정 및 실적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하도급업체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건설공사대장을 전자 통보하도록 지정·고시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은 무엇입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건설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1999년부터 구축·운영하는 정보통신망입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는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외에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건설사업관리능력평가·공시시스템(PCM), 토석정보공유시스템(TOCYCLE), 부실별점관리시스템(PIS), 정부인트라넷(GOV)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기 위해서는 <http://www.kiscon.net>에 접속하여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를 선택합니다.



4.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시행시기는?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3년부터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통보주체 및 대상

1. 건설공사대장의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원도급건설공사대장>

-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주계약자관리방식) 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건설업체가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그 기재사항을 통보해야 합니다.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등)으로 하도급 받은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사)가 일괄적으로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단, 대표사 외의 나머지 구성원은 대표사가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통보 주체는 누구입니까?

☞ 건설교통부고시 공동도급운영기준(제2000-81호)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동수급의 경우에 대표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약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선임하고, 그 대표사가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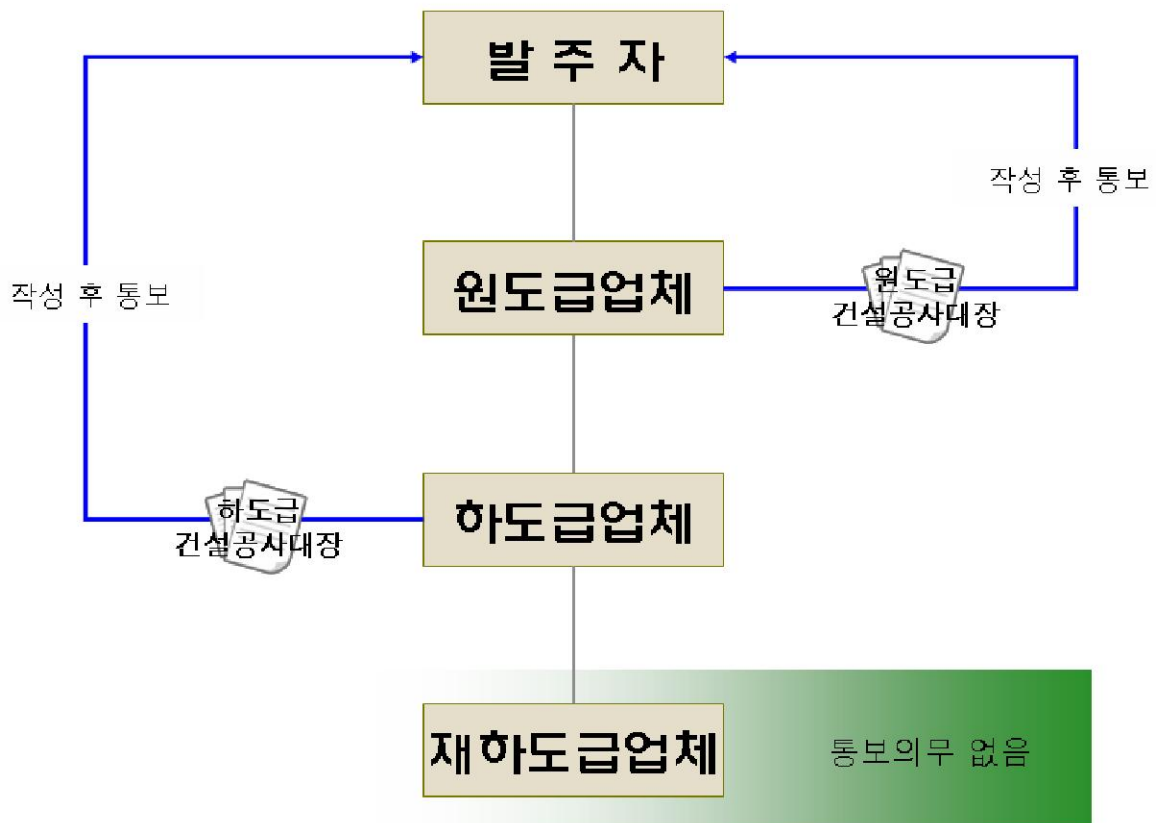
3. 공동도급인 경우, 자사 이외에 다른 구성원의 정보까지
모두 통보해야합니까?

☞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으로 도급받은 경우, 건설공사대장은 대표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정보를 함께 기재하여 통보해야합니다.

4. 건설공사대장은 누구에게 통보합니까?

☞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모두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 공사대장에 기재된 발주자에게 해당 공사대장이 통보됩니다.



5.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서 통보한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 원도급업체는 하도급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조회할 수가 없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에 대해 허위 작성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6. 건설공사대장은 언제까지 통보해야 합니까?

-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7. 통보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원도급건설공사대장>

- ☞ 도급금액(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 2003년 계약이 체결된 경우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공사가 통보대상입니다.

※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 공사가 통보대상이 됩니다.
- 즉, '08년 1월 1일 이후 1억원 이상의 원도급 현장으로부터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받은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원도급공사	하도급공사	통보대상여부
1억원 이하	하도급공사	X
1억원 이상	4천만원 이상 하도급공사	하도급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
	4천만원 이하 하도급공사	X

※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도 모두 통보대상에 해당됩니다.

8. 건설공사대장 통보기준금액인 1억원(4천만원)에는 부가가치세 및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통보기준금액(원도급 : 1억원 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대장을 작성·통보해야 합니다.
- 관급자재비는 도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급자재비를 제외한 금액이 통보기준금액(원도급 : 1억원 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사대장을 전자적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도급건설공사대장>

9-1.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공사금액 증액은 변경계약이 수반되므로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①계약일자는 변경계약일, ②도급금액에는 변경도급금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은 최초 계약된 내용 및 공사 진행중에 발생한 사항을 입력하여 통보합니다.

<하도급건설공사대장>

9-2.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까?

- 최초 계약은 4천만원 미만이었지만 4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는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변경계약시점에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 이 경우 ①계약일자는 변경계약일, ②도급금액에는 변경도급금액을 입력하고 나머지 사항은 최초 계약된 내용 및 공사 진행중에 발생한 사항을 입력하여 통보합니다.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10-1. 당초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었으나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1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건설업체는 건설공사대장 변경통보로 발주자에게 변경계약사항을 통보해야 하며, 변경통보한 모든 항목이 발주자의 확인완료처리가 되면 “준공처리”를 합니다

※ 준공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한이 없습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0-2. 당초 하도급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계약변경으로 도급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때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계속 통보해야 합니까?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 하도급 공사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도중에 변경계약으로 인해 4천만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때, 건설업체는 변경계약사항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통보하고 발주자의 확인처리가 되면 건설업체에서 ‘준공처리’ 를 합니다.

※ 준공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기한이 없습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1. 원도급공사가 1억원 이상이었다가 1억원 미만으로 변경 계약 되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변경통보를 계속 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건설공사대장의 통보기준은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이므로 계약도중 변경계약으로 1억원 미만이 되었을 경우 그 이후에는 통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원도급업체는 1억원 미만 변경 계약사항을 “변경통보”한 후 “준공처리”하게 됩니다.
- 원도급업체가 더 이상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하도급업체도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더 이상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2.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 계약 되어 변경된 시점부터 통보되기 시작한 경우,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는 원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은 하도급 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다.
- 원도급공사가 1억원 미만이었다가 1억원 이상으로 변경계약된 경우 원도급업체는 건설공사대장을 변경계약시점에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원도급업체가 변경계약시점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의 적용을 받으므로 변경계약일 이후에 4천만원 이상의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체는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 합니다.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13.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도급금액은 통보대상인 1억원 미만이지만, 총공사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통보대상이 됩니까?

-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계약별로 이루어지게 되나, 통보대상은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총공사 부기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14. 자기공사인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됩니까?

- ☞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는 도급받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기공사는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5. '08년 1월 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08년 1월 1일 이후에 공사금액 또는 준공기한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통보해야 합니까?

-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계약된 하도급 공사부터 통보대상이 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16. 건설업체(A)가 도급받은 공사가 아닌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건설업체(A)와 계약하는 협력업체(B)들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 시행사(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A)는 발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협력업체(B)와의 건설공사 계약은 원도급계약이 됩니다.

- 협력업체(B)의 공사계약금액이 건설공사대장의 통보대상인 경우(1억원 이상)라면 협력업체(B)는 원수급인이 되므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 자기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A)는 발주자에 해당하고 A사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B)는 원수급자가 됩니다. 따라서 B는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인 A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17. 공사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 등을 제조해서 납품하는데 이때도 통보해야 합니까?

☞ 단순 납품의 경우에는 통보대상이 아니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납품과 함께 그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18. 계약서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서 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도급금액·공사기간 기타 사항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99조제2호의 규정에서는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1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전자통보하여야 합니다.

19.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의하여 원수급자인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받은 종합건설업체도 원수급업체와 별도로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해야 합니까?

-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하는 주체는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업체이므로, 하도급업체는 종합건설업체라 하더라도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계약한 하도급공사는 도급금액 4천만원 이상일 경우 하도급 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종합건설업체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합니다.

20.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공사(재하도급공사)인 경우에도 재하도급업체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해야합니까?

-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수급인은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원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하수급인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재하수급인은 통보의무가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④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 나. 수급인의 서면승낙을 받을 것

21.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 공사도 통보해야 합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 “건설공사”의 정의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정의)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22.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 등과 건설공사가 아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복합된 공사인 경우에 전체공사에 대해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아니면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합니까?

☞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23.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 현장설치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완료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건설공사로 계약체결한 사항이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하여 공사대장을 전자통보 해야 합니다.

24. 매년 연간 시설물유지보수에 대한 공사를 계약 체결하는데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액은 따로 명시되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발생하는 보수공사를 시행후 정기적(월별) 또는 해당 건수마다 시행분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이른바 단가계약),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 단가계약공사인 경우 계약시 도급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계약 체결 후 상황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므로, 정확한 도급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대상으로 보지 아니 합니다.

- 계약서상 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통보기준금액(원도급 : 1 억원이상, 하도급 : 4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25.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공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건설업체는 해당공사의 처리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변경통보를 합니다.

■ 발주자

1. 조달청이 공사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조달청과 실수요기관 중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발주자는 누구입니까?

- ☞ 정보활용 측면에서 공사계약대행기관인 조달청보다는 실수요기관을 발주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는 대상은 실수요기관입니다.

2. 발주자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 ☞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기관(업체)을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발주자당 1개씩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기관(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에게 ID와 패스워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업무에 따라 소속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업무처리” 또는 “조회만 가능”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발주자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소속 사용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3. 발주자 기관명을 자동 입력하기 위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망 (www.kiscon.net)의 발주자란에서 공공기관 검색을 했는데, 해당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건설공사대장 작성 시 공공기관의 경우에 발주자 코드를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나, 자동입력은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go.kr>)에 접속해서 기관코드에 해당기관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코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http://code.gcc.go.kr>)을 통하여 등록하고, 등록이 완료되면 발주자 담당자가 부여받은 기관코드와 기관명을 검색하여 가입합니다.

▷ “공공기관코드”란? :

- 현재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코드는 G2B(전자정부조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코드와 동일하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표준기관코드”입니다.
-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코드(행정표준기관코드)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중인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 (<http://code.gcc.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단, 각 행정기관(중앙, 시도, 교육청), 입법, 사법, 헌법, 기타 정부투자기관등은 행정안전부 행정표준코드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이외 군부대, 어린이집, 임의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지사 등인 경우 G2B에서 “Z”로 시작되는 코드로써 관리됩니다. 이 경우, 이를 “공공기관코드”로 사용합니다.

4.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 완료하게 되면 발주자에게 “통보했음”을 알리는 이메일이 송부됩니다.
이때 발주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업체, 건설공사명, 통보날짜 및 확인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건설업체가 기한내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 발주자는 해당 업체의 행정처분 사유 즉, 기한내 미통보, 허위 통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6. 발주자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과 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하도급계약내용과 비교하여 하도급 미통보 및 불일치 기재사항 등을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까?

-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상호 연계되어 있습니다.
-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며, 발주자는 불일치사항, 상호 누락된 사항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발주자가 건설공사대장 또는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기재된 보증서 발급사실이 발주자에게 사전보고 없이 해제 되거나 보증 취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현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은 보증기관(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계약보증서, 공사이행보증서, 선급금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입찰보증서의 정보를 연계·제공받고 있습니다.
- 보증서의 신규·추가발급, 연장, 변경, 취소, 해제 등 모든 변경사항을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8. 발주자가 건설업체로부터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은 후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직접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건설업체가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정할 내용들을 적어서 “수정요청”처리를 합니다.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조회한 다음 해당 내용을 수정하고 “재통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발주자는 “재통보”된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 건설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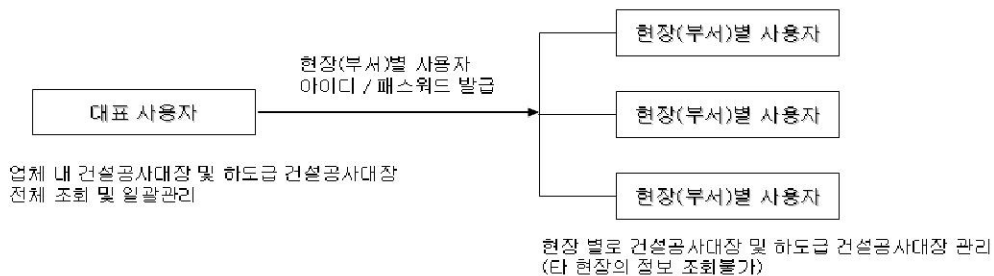
1. 건설업체의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는 어떻게 발급됩니까?

☞ 건설업체는 우선 대표사용자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란 당해 업체를 대표하는 사용자로서 본사 차원에서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대표사용자는 건설업체당 1개씩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소속업체의 건설공사대장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현장별 또는 부서별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대표사용자는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등록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아이디에 대하여 사용중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외부에 유출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대표사용자의 책임 하에 현장(부서)별 사용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2. 기존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던 건설업체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존에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던 건설업체는 별도의 사용자 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 상단 메뉴에서 “하도급건설공사대장관리”를 선택하면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통보할 수 있습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onstruction Information System)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시스템안내', '건설업체', '발주자', and '사용자지원'. The main menu has '건설업체', '원도급 건설공사대장관리', '하도급 건설공사대장관리' (highlighted with a red circle), '업체정보관리', '관리자요청', and '메세지관리'. The left sidebar lists various management functions under '하도급공사대장관리'.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list of notices (공지사항) with columns for subject, date, and a 'MORE+' button.

알림사항	공지사항
[알림] SMS전송기능 추가, 인쇄프로그램 교체 안내	2010-02-11
[알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10-02-02
[알림] 행정처분 통보기능 적용 알림	2010-01-07
[알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고	2010-01-07
[알림] 시스템 일시중지 안내	2010-01-06

3. 아이디를 발급받기 위해 업체명을 검색했는데 자사업체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용자 등록] 화면에서 “업체등록요청” 클릭하여 당해업체정보를 입력 후 “등록신청” 버튼을 누르고 건설업등록증 사본을 관리자에게 FAX(02-3496-3888)로 전송합니다.
- 관리자는 신청서류를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에서 건설업체 등록정보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누락된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은 건설업등록관청(광역시·도청, 시·군·구청)에서 건설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이며 전국건설업체 등록 및 처분사항 등이 종합관리되고 있습니다.

- ※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은 비건설업이므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신규작성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1.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 클릭시 메인화면에 공사명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통보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명을 선택한 후 공사대장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대상이 아닌 공사명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를 선택 후 '선택공사 삭제요청 >'을 클릭하여 내용을 기재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삭제하여 드립니다.

○ 공사대장 신규 작성

작업단계 : **공사선택** -> 공사개요작성 -> 세부내용작성 -> 발주처에 통보

- 아래의 목록은 연계정보(G2B 계약정보, 보증정보, 착공정보 등)를 통하여 관리자가 임시적으로 등록된 공사입니다.
- 원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려는 공사가 아래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택할 공사가 없을 경우에는 하단의 "해당공사 없음"을 클릭합니다.
- 관리자가 임시등록한 공사가 해당업체와 관계가 없다면 해당 공사를 선택하여 하단의 "선택공사 삭제요청"을 클릭합니다.

선택	공사명	현장소재지
<input type="checkbox"/>	합의대체공사	경기
<input type="checkbox"/>	신축공사	경남
<input type="checkbox"/>	신축공사	경남

선택공사 작성 >

해당공사 없음 >

선택공사 삭제요청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2.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신규작성시 원도급공사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원도급건설업체명 DB건설

원도급공사명 에이스

검색 >

선택	원도급 공사명	원도급 건설업체명	업체상태	공사지역	원도급 계약일자	발주처
<input type="checkbox"/>	원도급공사명: 에이스 존 오피스빌 신축공사	원도급 건설업체명: DB건설	업체상태: 확인	공사지역: 서울 중산구 이촌2...	원도급 계약일자: 2009-11-02	발주처: [redacted]

① 원도급건설업체명 기재시 (주), (유),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제외한 업체명만 기재하여 검색합니다

② 원도급공사명기재시 띄어쓰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사명 전체를 기재하기 보단 핵심이 되는 단어(6자 이내)를 기재하면 검색이 용이합니다.

- ①, ②의 방법대로 하였음에도 원도급 공사명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본 Q&A 30page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도급공사등록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3.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 원도급 공사명을 선택 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도급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아직 통보하지 않아 해당공사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 ‘원도급공사등록요청’을 한 후 하도급계약서를 팩스(02-3496-3888)로 발송하면 확인 후 원도급공사대장을 임시로 등록합니다.
- 관리자가 임시로 등록한 공사를 선택하여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합니다.

○ 공사개요

1. 도급계약은 체결되었으나, 착공일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경우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착공일란에는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 신규 통보시 착공예정일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착공일이 확정된 경우 ‘변경통보’기능을 이용하여 착공일을 변경한 후 통보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2. 당사는 2개 이상의 건설업을 등록한 건설업체로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경우, 도급금액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 [공사개요]에는 도급금액 총계를 기재하고 [수급업체]란에는 다음과 같이 건설업종별로 하도급 받은 공종과 도급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입력합니다.

NO	업종	업종등록번호	업종별계약금액	선택
1	주거목사업	0000	200,000,000	<input type="checkbox"/>
2	선포사업	1	100,000,000	<input type="checkbox"/>

해당 업종이 없거나 틀린 경우, [업체정보관리]메뉴에서 업종등록 요청

○ 현장기술인

1.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해야할 기술자의 범위는?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35조에 의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이때 배치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상기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확인을 받은 자를 건설공사 대장의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 기재하여 전자통보하면 될 것입니다.
- 다만,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배치 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므로, 합의된 사항에 따라 결정된 기술인을 기재합니다.

2.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입력시 당해기술자가 수급업체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도 입력해야 합니까?

- ☞ 현장배치기술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로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는 현장배치기술자로 볼 수 없으므로, 건설공사현장에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현장기술인 배치현황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현장기술자가 공사기간동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기술자를 삭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 ☞ 공사기간동안 해당 기술인이 퇴사 등으로 현장에서 철수하는 경우에는 현장기술인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기간 종료일을 실제 종료일로 기재하여 변경통보합니다.
- 변경되어 배치되는 현장기술인은 추가로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4. 현장기술자 배치현황이 전자통보되면 전산처리되어 기술인 이중배치도 검색될 수 있는데, 이때 현장기술자를 2개이상의 현장에 이중배치하게 되면 이에 관한 제재가 있습니까?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으나, 그 이외의 경우에 1인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한다면 1개의 현장에는 건설기술인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2호에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를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현장기술인 배치 기준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건설업체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 이때 배치기준은 동법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상기규정에 불구하고 도급계약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현장 배치기술인의 자격 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자격종목, 등급, 인원수)이 우선합니다.

○ 공동이행

1.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건설공사대장을 기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사외의 나머지 구성원들이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까?

☞ 공동수급체 모든 구성원은 대표사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참여)공사 조회

-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사 외)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사의 공사대장 작성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로서 건설공사대장 통보 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가 작성한 내용입니다.
 - 목록의 "현재상태"와 "발주자확인"을 통해 건설공사대장 통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기간(계약일) : 2003년 1월 부터 2010년 12월 까지 [검색]

공사명 :
 발주처명 :
 대장상태 : 전체목록

건수 : 2건

No	공사명 발주자	계약구분 계약일자	도급방법 준공일자	변경 자수	대장상태 통보일자	발주자확인 확인일자
1	경기 231 서울미사리초등학교 교사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제한경정 2009-06-17	분담(공동이행 포함) 2009-08-19	8차	변경통보 2009-09-30	대기중
2	00대학교운동장 조명시설 공사 08발주청/	제한경정 2004-01-01	공동이행 2004-01-01	1차	신규통보 2004-12-09	대기중

<공동도급(참여)공사 조회 예시>

2. 토목, 건축, 조경, 전기, 정보통신 등 여러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각 공사별로 분담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특정공사에 대해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 상기 질문과 같은 방식의 계약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대장의 도급방법선택란에 “분담(공동이행이 포함된 경우)” 메뉴를 따로 두고 있으니, 이를 선택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선택된 메뉴에 따라 분담내용대로 기재하되,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면 구성원별 지분율과 도급금액을’ ‘분담부분이 공동이행으로 시공되지 않으면 분담내용(구체적인 내용)과 도급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공사대금수령

1. 공사대금수령사항을 입력할 때 발주자가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통보해야 합니까?

- 공사대금 수령사항에는 원도급자가 지급한 대금 뿐 아니라 발주자가 직접 지급한 대금도 모두 포함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하도급/재하도급 업체

1.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계약 후 착수하기 전에 업체사정으로 계약 해지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재)하도급업체를 이미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 항목에 기재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관리자 요청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합니다.
- [관리자 요청]-[건설공사대장 (일부)삭제요청]을 통하여 요청하면 관리자가 확인 후 삭제합니다.
- 아직 통보하기 전이라면 착수 전에 계약 해지된 업체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 보증서

1.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이전 차수 계약 때 납부한 하자보수보증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 하자보수보증인 경우 금차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사항만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2.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차수별로 납부하지 않고 총 공사의 준공검사를 한 후에 총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의 하자보수보증금란에 어떻게 입력해야 합니까?

☞ 이 경우 최종차수 건설공사대장에 총 공사에 대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합니다.

※ 참고사항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발체) :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후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대여업체 및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

1. 건설기계대여업체의 범위는?

☞ “건설기계대여업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건설기계”라 함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다음의 기계를 말합니다.

1. 불도우저 2. 굴삭기 3. 로우더 4. 지게차 5. 스크레이퍼 6. 덤프트럭
7. 기중기 8. 모우터그레이더 9.로울러 10. 노상안정기
11. 콘크리트벙칭플랜트 12. 콘크리트피니셔 13. 콘크리트 살포기
14. 콘크리트믹서트럭 15. 콘크리트펌프 16. 아스팔트믹싱플랜트
17. 아스팔트피니셔 18. 아스팔트살포기 19. 골재살포기 20. 쇠석기
21. 공기압축기 22. 천공기 23. 향타 및 향발기 24. 사리채취기
25. 준설선 26. 특수건설기계* 27. 타워크레인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수목이식기, 터널용고소작업차, 노면측정장비

※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2항(건설기계임대차의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건설기계대여업체의 실제지급방식이 월대 또는 일대로 지급되는 경우 대여기간과 금액을 어떻게 입력합니까?

☞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은 지급방식에 상관없이 전체 대여기간, 전체 대여금액으로 기재합니다.

건설기계대여업체와 계약당시 대여기간과 대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정대여기간, 예정대여금액으로 기재하고 대여가 끝나고 전체 대여기간과 전체 대여금액이 확정되면 변경통보합니다.

3.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의 입력 범위는?

- ☞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에 따라 입력을 합니다.

[부품제작·납품업체 범위]

-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는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부품을 건설업자가 제시한 설계도, 시방서 등에 따라 주문받아 가공 또는 조립하여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단,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 건설공사정보시스템 입력방법

- 건설공사용 부품제작·납품업체는 1건당 납품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재합니다.
- 여러 가지 제품을 동시에 납품받을 경우 [제품명에는 “대표제품명 외 ○ ○”]를 [납품일, 규격, 수량, 단가에는 대표제품명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금액에는 전체납품금액을 입력합니다.
- 계약(약정)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입력합니다.

○ 행정업무

1. 직접시공계획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나요?

☞ 2008년 이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함께 제출한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 신규계약한 원도급공사에 대하여는 반드시 서면제출 하셔야 합니다.

도급금액 30억원 미만공사	직접시공계획서	
	서면통보	건설공사정보시스템 (CWS)
2008년 1월 1일 이전 신규계약공사	서면제출	입력하지 않음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계약공사	서면제출 또는 공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통보	

※ 직접시공계획서의 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의5)

영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의 통보(건설산업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2호의 서식에 의한다.

2. 하도급계약통보서를 건설공사대장통보시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까?

☞ **2008년 1월 1일부터** 원도급업체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기존에 서면으로 통보하던 ‘하도급계약통보서’를 전자적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해당업무를 서면통보 또는 전자통보 중 하나를 택하여 행정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면통보를 할 경우에는 전자통보를 할 필요가 없으며,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전자통보 하였을 경우 서면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도급계약통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통보(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는 각각 별지 제23호서식과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른다.

3.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건설공사대장 통보시 포함하여 입력하여야 합니까?

☞ 입력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업체에게 교부 및 미교부(미교부사유 포함)하였는지의 내용을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4. ‘하도급계획(서)’ 대상 공사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 ☞ 도급금액 300억 이상의 ‘최저가낙찰제공사’ 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의 [하도급계획] 사항을 작성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건설공사대장에 입력한 ‘하도급계획’ 은 별지 제24호 서식 및 제24호의2 서식에 따라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최저가낙찰제공사’ 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대장에 하도급계획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가입정보를 건설공사대장통보 시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합니까?

- ☞ 2008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부터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된 현장일 경우에는 해당정보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산재보험 및 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해당내용을 시스템에 기재할 경우 적용대상 이외의 공사이므로 '제도시행이전'으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6. 시공능력평가를 받기위해 매년 협회에 제출하는 기성실적 신고내용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의 내용이 대부분 중첩됩니다.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성실적 신고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인증을 적용하여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신청)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 대 상 공 사

- 2008년 1월 1일 이후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공공공사

* 현재(2011년 2월) 민간공사 및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계약해지·준공 및 준공처리

1. 공사가 준공되어 더 이상 하도급 건설공사대장이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건설업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건설업체는 준공날짜를 기재하고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준공처리”를 합니다.
- ‘준공처리’이후 미통보한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준공처리’를 취소하고 다시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기재사항을 통보하였다면 다시 ‘준공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 준공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건설공사대장 관리의 편의를 위해 추가된 기능입니다.
- * 변경통보는 의무사항이니 준공처리를 하기 전 모든 변경(추가) 사항이 통보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원인 #1 : 최종변경통보한 내용을 발주자가 확인하지 않았고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발주자의 확인을 위해 60일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60일이 경과한 후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처리 하기 바랍니다.
- 준공처리가 되지 않는 원인 #2 : 공사대금수령사항, 현장기술인 배치현황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공사대금수령의 잔액이 '0원'이 아니거나 현장기술인 배치기간 종료일이 금일 이후인 경우에는 준공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변경통보를 먼저 한 후 준공처리 하기 바랍니다.

준공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준공처리의 기한 또한 없습니다.

○ 장기계속공사

1. 장기계속공사로서 하수급인 업체가 이전 차수공사때 하도급 계약을 했고, 금차 공사중반까지 시공하는 경우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해야 합니까?

☞ 금차 건설공사대장의 하수급인 현황에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차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대장 신규작성시 이전 차수에 기재하였던 하수급인의 내용이 연계됩니다. <2009년 10월 1일 적용>

※ 장기계속공사의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301번 게시물([알림] '장기계속공사' 신규작성방법 변경(2차이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1차 공사의 계약당시 총공사에 대하여 납부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차 이후 차수 공사에 대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이 작성할 경우 계약보증금란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 각 차수별 건설공사대장 작성시 계약보증금란에는 1차 계약 체결 당시 납부한 총 공사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납부일을 기재합니다.

1차 계약 체결 후 총 공사의 변경 계약이 발생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로 발급받은 보증서를 함께 기재합니다.

- 2차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대장 신규작성시 이전 차수에 기재하였던 보증금의 내용이 연계됩니다. <2009년 10월 1일 적용>

※ 장기계속공사의 작성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301번 게시물([알림] '장기계속공사' 신규작성방법 변경(2차이상))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3.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 계약기간동안 매년 금(당)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금차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까?

☞ 건설공사대장의 작성은 공사의 계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수 계약별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대장은 차수 계약기준으로 개별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차수별 건설공사대장에는 총공사부기금액과 금차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기계속공사”란? :

- 공사의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수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사로 이 경우에는 각 회계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 장기계속공사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합니다. 2차 공사 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4. 계속비 공사인 경우 매년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 계속비 공사인 경우는 장기계속공사처럼 매년마다 계약 체결을 하지 않으므로 최초 총액계약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합니다.

최초계약일부터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 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 “계속비”란? :

- 그 공사나 용역의 완성에 수년이 걸려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예산 형태입니다. (예산회계법 제22조 제1항)

▷ “계속비공사”란? :

- “계속비”로 책정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공사를 말하며 계속비공사는 총액 (연부액은 부기)으로 체결되는 바, 매년마다 년차별로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을 체결하다가 도중에 계속비로 계약성질이
변한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되어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최종준공일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합니다.

이때 건설공사대장의 도급금액란에는 반드시 총공사부기금액과 당차 도급금액을 모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된 7년짜리 공사)

건설공사대장	OO공사(1차)	OO공사(2차)	OO공사(3차)
차수	1차	2차	3차
년도(기간)	2004	2005	2006 - 2010
계약성질	장기계속	장기계속	계속비 (장기계속에서 계속비로 변경)
총공사부기금액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1,000,000,000 원
당차 도급금액	200,000,000 원	200,000,000 원	600,000,000 원

▷ 이 경우에는 모두 3개의 건설공사대장이 작성되며 1차와 2차는 장기계속공사이므로 차수별로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게 됩니다.

▷ 장기계속공사에서 계속비공사로 변경된 3차에는 계속비공사의 작성 기준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작성하고 준공년도인 2010년까지 1개의 건설공사대장에 그 기재사항 및 변경사항을 계속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 장기계속공사로서 금차 계약체결 후 건설공사대장을 작성시 금차 계약의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이후 차수의 건설공사대장에는 ‘최초 총공사부기금액’과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중 어느 것을 기재해야 합니까?

☞ 변경된 총공사부기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 예시(장기계속공사로서 총공사부기금액이 변경된 경우)

건설공사대장	OO공사(1차)	OO공사(2차)	OO공사(3차)
차수	1차	2차	3차
년도(기간)	2007	2008	2009
계약성질	장기계속	장기계속	장기계속
총공사부기금액	1,000,000,000 원	1,100,000,000 원	1,200,000,000 원
총공사부기금액 변경	↓ 1,100,000,000 원	↓ 1,150,000,000 원 ↓ 1,200,000,000 원	

▷ 2차 계약 기간 도중에 각각 1,150,000,000원과 1,200,000,000원으로 변경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 사항 통보를 통하여 그 사항을 통보합니다.

▷ 2009년에 3차 공사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할 때 건설공사대장의 총공사부기금액 입력란에는 3차 공사의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인 1,200,000,000원을 입력하게 됩니다.

7. 현재 건설업체가 파산한 상태로 신규 수주는 불가능하지만 과거에 도급 받은 공사(장기계속공사)는 계속 진행 상태이며 통보제도 시행일자 이후에 차수별 계약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도 통보하여야 합니까?

☞ 통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82조 또는 제83조의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를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 종합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록실효된 경우에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업자로 간주되므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발주자 확인/미확인/수정요청

1.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제대로 통보되었는지 여부와 발주자 확인 결과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 건설업체의 건설공사대장 목록에 통보여부를 표시하는 “대장 상태”란과 발주자 확인결과를 표시하는 “발주자확인”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수 : 39 건

No	공사명 발주자/관리번호	계약방법 계약일자	도급방법 준공일자	통보 차수	대장상태 통보일자	발주자확인 확인일자	변경통보
1	121 231 롯데오 오피스텔 신축공사(공사명 변경) 지원건설/354889	제한경쟁 2010-01-01	단독도급 2010-12-31	1차	신규통보 2010-01-14	대기중	변경통보
2	분달이빌데스트 313/352349	제한경쟁 2009-12-01	분달이별 2009-12-31	1차	작성중 삭제		
3	에트로빌 신축공사 조운진/348074	제한경쟁 2009-11-12	분달(공동이 별 포함) 2009-11-18	3차	변경통보 2009-12-22	대기중	변경통보
4	121 131 에트로빌 신축공사 조운진/345900	제한경쟁 2009-11-11	분달(공동이 별 포함) 2010-03-03	1차	재통보 2010-01-15	대기중	변경통보
5	121 231 에트로빌 신축공사 조운진/348071	제한경쟁 2009-11-10	분달(공동이 별 포함) 2009-12-23	5차	변경통보 2009-12-08	대기중	변경통보
6	SSL테스트 08발주형/344002	제한경쟁 2009-11-04	단독도급 2009-11-30	1차	신규통보 2009-11-11	대기중	변경통보
7	건설공사대장 서식 변경 관련 작업 중(희구) 21/342948	제한경쟁 2009-11-02	공동이별 2009-10-28	1차	작성중 삭제		
8	121 131 에이스 온 오피스텔 신축공사 조운진/344000	일반경쟁 2009-11-02	단독도급 2010-11-17	2차	변경통보 2009-11-05	수정요청 2009-11-05	
9	121 231 건설공사대장서식변경 작업중(희구) 08발주형/334709	제한경쟁 2009-11-02	분달(공동이 별 포함) 2009-08-27	1차	작성중 삭제		
10	가성실적중령 테스트-hss(20091124) 국토연구원/346838	일반경쟁 2009-11-02	단독도급 2009-11-30	1차	신규통보 2009-11-24	확인완료 2009-11-24	변경통보

<발주자 확인여부 및 확인일자 표시 부분>

2.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이미 발주자에게 “통보” 처리한 뒤에 오기 또는 미입력 항목이 발견되었는데 이때 입력 내용의 수정이 가능합니까?

☞ 오기 또는 미입력항목이 발견되었을 경우 ‘변경통보’ 기능을 이용하여 해당내용을 변경 및 추가하여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통보’처리를 하기 전에 작성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에서 기재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통보해야 합니다.

3. 통보내용에 기재상 오류가 있어 발주자가 “수정요청”처리를 한 경우, 건설업체는 수정요청사유를 어떻게 확인하고 처리합니까?

☞ 건설공사대장 조회 및 변경의 해당 공사대장 [발주자 확인]란의 “수정요청” 글자를 클릭하여 수정요청날짜 및 수정요청사유를 확인합니다.

- 해당 공사명을 클릭하여 공사대장을 수정한 후 대장통보를 하면 수정된 내용으로 통보됩니다.

The screenshot displays the '건설공사대장 조회' (Construction Project List Inquiry) page. The main table lists project entries with columns for '연차' (Year), '상태' (Status), '날짜' (Date), '비고' (Remarks), '사용자' (User), and '연락처' (Contact). The first entry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2', showing a '수정요청' (Request for Modification) status on '2009-11-05' with the time '오후 2:56:45'. The remarks for this entry are '조용진 한강배치된 수정요청'.

On the right sidebar, there is a '대장상태 통보일지' (Project Status Notification Log) section. A '수정요청' button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and a circled '1', indicating the next step to check the modification details.

<수정요청 내용 확인 예>

4.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한 후 발주자가 “확인완료“ 처리를 하지 않아도 그 이후에 변경통보를 할 수 있습니까?

☞ 건설업체에서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하지 않아도 변경(추가)사항을 입력하여 변경통보 할 수 있습니다.

5.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어떻게 통보해야 합니까?

☞ 발주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발주자중 대표자(기관)을 선정하여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아야 하므로, 도급계약 체결 시 건설공사대장을 통보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

1. 착공을 먼저 하고 계약을 나중에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일을 착공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 행정처분 여부는?

-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체결일(변경일/신규사항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99조제3의2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통보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에도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도급 공사인 경우, 대표사가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은 대표사에게만 부과됩니까?

☞ 공동도급 대표사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귀책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구성원에 행정처분이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통보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가 “수정요청”으로 처리한 경우도 허위통보에 해당이 됩니까?

☞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단순 오기, 착오 등의 경우도 있을 것임) 사례별로 발주자 측에서 판단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4.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사유가 됩니다.

5. 건설업체에서 기한내에 통보하였는데 발주자가 30일 이내에 확인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①신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②변경(추가)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통보를 하였다면 발주자의 확인이 없더라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시행 질의·답변(FAQ)

발 행 2012년 3월
발행처 (재)건설산업정보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88-16번지
전 화 1588-8456
팩 스 02-3496-3888

◆ 본 질의·답변 내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질의·답변 내용은 2012년 3월 기준의 시스템과 제도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향후 시스템 및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